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와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7. 19. 시행)됨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지원(안 제1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비 및 유지관리비, 운전원 인건비, 예약·배차시스템 운영비,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방법(안 제14조의3 신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24시간 상시 운행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운행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교통수

단을 사전 예약 등의 방법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이동지원센터 등의 업무(안 제14조의4 신설)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및 운전자 관리 등으로 정하는 한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예약 신청 및 관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등으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이동지원센터 등의 지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비
2.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
3. 특별교통수단 차량 정비·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4.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5. 특별교통수단 예약·배차시스템 운영비 등
6.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시간: 24시간 상시 운행
2. 운행범위

가. 해당 시·군

나.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1개 이상의 도(道)로서 해당 시와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는 지역
라. 시·군의 경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1) 해당 시·군이 속한 도(道)의 시·군

2)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1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를 포함한다)

마. 그 밖에 해당 시·군이 인접 생활권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3. 이용운임

가. 관내운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의 운
임으로 해당 시·군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의 2배 이
내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운임

나. 관외운임: 가목 전단의 사업구역 외의 운임으로 운행거리가 같
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의 노선 여
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의 2배 이내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
는 운임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사전 예약 등의 방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이동지원센터 등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2.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이용신청 접수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차량 안전관리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등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제2호의 업무에 필요한 전산망 등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7. 출발지, 도착지, 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의 보관 및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단서 외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도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이 영 제14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행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특·광역시는 제외한다)는 도지사 또는 인근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말·공휴일 및 야간시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 및 여객운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단체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이 영 시행일 당시 체결되어 있는 위탁계약서 상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이동지원센터 등의 지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1.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비</u> <u>2.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u> <u>3. 특별교통수단 차량 정비·유류비 등 유지관리비</u> <u>4.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u> <u>5. 특별교통수단 예약·배차시스템 운영비 등</u> <u>6.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u> <u>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u>

<신 설>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시간: 24시간 상시 운행

2. 운행범위

가. 해당 시·군

나.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1개 이상의
도(道)로서 해당 시와 행정
구역 경계를 접하는 지역

라. 시·군의 경우(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와 광
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
다)

1) 해당 시·군이 속한 도
(道)의 시·군

2)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1개 이상의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
를 포함한다)

마. 그 밖에 해당 시·군이 인
접 생활권을 고려하여 조

레로 정하는 지역

3. 이용운임

가. 관내운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
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의 운
임으로 해당 시·군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 운임의 2배
이내로 해당 시·군의 조
레로 정하는 운임

나. 관외운임: 가목 전단의 사
업구역 외의 운임으로 운
행거리가 같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제1호라목의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운임의 2
배 이내로 해당 시·군의
조레로 정하는 운임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사전 예약 등의
방법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신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이동지원센터 등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2.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이용신청 접수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차량 안전관리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등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제2호의 업무에 필요한 전산망 등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7. 출발지, 도착지, 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의 보관 및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
원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운
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단서 외에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
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
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도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
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이 영 제
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행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군수(특·광역시는 제외한
다)는 도지사 또는 인근 시장·
군수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말·
공휴일 및 야간시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 및 여객운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단체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3805